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7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II . 검토의견	2
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

I. 개 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2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23.
- (3) 회 부 일 : 2026. 1.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II. 검토의견

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1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여기구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이만회의원안)</u>
☐ 개별소비세 면제(제111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여기구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이만회의원안)</u> ☐ 부 칙 ○ 시행일 - <u>2026년 1월 1일(여기구의원안)</u> - <u>2027년 1월 1일(이만회의원안)</u>

* 여기구의원안 2025. 11. 18. 발의(의안번호 14340), 이만회의원안 2026. 1. 23. 발의(의안번호 16270)

☐ 개정안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

로써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비용을 경감하고 도서지방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된 1977년에 마련된 것으로, 규정이 처음 신설될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따로 없었으나 1998년 말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2003년 말까지 적용기한을 처음 설정하였고,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최근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된 석유량과 조세감면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3,132kl, 2023년에는 3,695kl, 2024년에는 3,794kl의 석유류가 자가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각각 15억 3,900만원, 17억 3,700만원, 18억 6,400만원임.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액 현황]
(단위 : kl, 백만원)

연도별	유종	공급물량	조세감면액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계
2022년	경유	3,130	745	112	194	488	1,539
	휘발유	2	0.6	0.1	0.2	0.3	1.2
	계	3,132	746	112	194	488	1,540
2023년	경유	3,692	879	132	228	495	1,734
	휘발유	3	1.2	0.2	0.3	0.4	2.1
	계	3,695	880	132	229	496	1,737
2024년	경유	3,791	970	146	252	494	1,862
	휘발유	3	1.1	0.2	0.3	0.1	1.9
	계	3,794	971	146	253	494	1,864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면세유 공급 대상 도서지방은 2024년 기준 총 31개 지역임.

[2024년도 지역별 도서지방 자가발전시설 공급 현황]

지역	자가발전 도서지역 수	자가발전 도서지역명
경남	5	지심도, 와도, 국도, 수도, 소매물도
인천	3	지도, 굴업도, 백아도
전남	18	하태도, 장도, 만재도, 상태도, 우이도, 금죽도, 각이도, 소각시도, 안마도, 모항도, 소늬도, 대늬도, 맹골도, 서거차도, 외병도, 광대도, 가사도, 삼마도
전북	2	관리도, 방축도
제주	2	추포도, 횡간도
충남	1	죽도
계	31	

자료: 수협중앙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육지에 비해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도서지방의 생활 여건은 육지와 비교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며, 특히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지방 거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유 제도와 같은 조세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¹⁾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석유류에 대한

면세가 중단될 경우 세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가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도서주민의 이용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전시설 관리·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군)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외에도 도서지방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 거		내 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면세유 혜택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운영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할 우려가 있음.

전력망이 연결된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미 일반 전력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면세유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

산할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자가발전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7억원 등 2027~2030년까지 4년간 총 68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부가가치세	△5	△5	△5	△5	△20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11	△11	△11	△11	△44	△11
교육세	△1	△1	△1	△1	△4	△1
합계	△17	△17	△17	△17	△68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1년만 연장하였음.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1년만 연장하되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같이 의결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주체

- 회원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공급 받은 석유류를 도서지역에 직접 공급

□ 자가발전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주체이며, 면세유 공급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자가발전 석유류 관련 수협의 역할

- 중 앙 회 : 회원조합으로부터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에 공급물량 신청, 회원조합에 면세유류 배정
- 회원조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신청 접수
관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에 면세유 직접 공급

□ 자가발전된 전기를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

순서	업무 내용	세부 업무 절차	비 고
①	공급요청	지자체는 관할 도서의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 수협(회원조합)에 면세유 공급요청	
②	유류카드 발급	수협은 공급 검토 후, 자가발전시설에 대해 유류카드를 발급	
③	면세유 공급	수협은 지자체의 면세유 신청에 따라 연간 소요량 이내에서 출고지시서를 발급 지자체는 출고지시서를 근거로 수협급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음	
④	대금정산	수협은 면세유 공급증서를 근거로 지자체에 면세유 공급 대금 신청 및 정산	